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상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23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5.

발 의 자 : 이상희 · 엄태영 · 최수진
한지아 · 배준영 · 박상웅
김 건 · 박성훈 · 김장겸
박준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,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·징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정부가 ‘철강산업 고도화 방안’의 하나로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발표한 바 있으나, 수소환원제철은 막대한 전기 사용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해당 철강산업에 대한 전기료 감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「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로서 수소를 이용하여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기술을 사용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, 해당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

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4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).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「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로서 수소를 이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기술을 사용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다.

제5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로서 수소를 이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철강을 제조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담금에 관한 적용례) 제5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

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전기의 공급약관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6조(전기의 공급약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전기판매사업자는 「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로서 수소를 이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기술을 사용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다.</u>
④·⑤ (생략)	⑤·⑥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
제51조(부담금) ① (생략)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·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	제51조(부담금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
